

전산전자공학부 내규집

소관부서 : 전산전자공학부

제정 2013. 0. 0 규정 제000호

제1조 (목적)

- ① 본 내규는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이하 "학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부회의)

- ① 학부회의는 학부의 최고 의결기구로, 학부의 중요한 업무는 학부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된다.
- ② 학부회의는 학부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 ③ 학부회의는 학부교수들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는 안건은 학부 재적 전임 교수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교수 1/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 학부사무실은 학부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제3조 (학부사무실)

- ① 학부 사무실은 학부의 대내외적 학사행정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며, 학부장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 ② 학부 사무실은 학부와 관련된 시설 및 기자재 등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

① (교육과정의 편성)

1. 학부에는 다섯 개의 전공(프로그램)이 존재하며, 각 전공의 교육과정 편성은 전산전자공학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2.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속한 학생은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3. 컴퓨터공학을 타학부 전공과 연계전공하는 경우 각 전공별로 전산전자공학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4. 전자공학을 타학부 전공과 연계전공하는 경우 각 전공별로 전산전자공학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② (교육과정의 개편)

1. 교과과정의 개편은 학부회의의 의결후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2. 교과과정의 개편안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PD교수 또는 학부장이 학부회의에 제출한다.

제5조 (교육과정의 운영)

①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의 공통 교과목의 운영)

1. 전자공학(심화) 전공과 컴퓨터공학(심화) 전공의 양 분야에 공통으로 속하는 교과목의 주요 변경 사항은 학부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2. 양 전공에 공통으로 속하는 설계 교과목의 학습성과, 강의목표, 강의계획서, 담당교수

의 결정은 학부장, PD교수가 모두 참여한 회의에서 정한다.

② (종합설계과목의 운영)

1. 종합설계 과목들의 운영 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전산전자공학부 종합설계 교과목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6조 (Information Technology 과목과 컴퓨터공학과목 간의 상호인정)

1. ITP 코드로 수강한 과목은 학생이 Information Technology 전공을 컴퓨터공학 전공 또는 컴퓨터공학심화 전공으로 변경할 때 동일과목명의 ECE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ECE 과목의 전공 소속은, 해당 IT 과목을 이수한 해의 수강편람에 나타난 전공 교과목 표에 열거된 전공으로 인정된다.
2. 위의 역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컴퓨터 전공의 ECE 코드로 이수한 과목을 졸업시점에 IT 전공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제7조 (학점인정)

① 편입생

1. 편입생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공학교육인증 세칙에 따른다.
2. 편입생이 일반전공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편입한 학기 중에 이전 대학 이수 과목들에 대한 학점 인정 신청서, 강의계획서 및 그에 준하는 문서와 함께 학부사무실에 제출한다. 학부에서는 과목별로 학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교환학생

1. 교환학생이 타 학교에서 이수한 전공 교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산전자공학부 교환학생 관리 지침을 따른다.
2. 교환학생이 타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공학교육인증 교과목으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세칙을 따른다.

③ 인턴십

1. 인턴십의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학점을 인정하기 위하여 학부 내에 2명이상으로 구성된 인턴십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인턴십 운영과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산전자공학부 인턴십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8조 (특화랩의 운영)

특화랩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전산전자공학부 특화랩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9조 (학생지도)

① (전공설명회)

학부는 매학기에 전공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공이수 및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한다.

② (전공지도교수의 배정 및 상담)

1. 학부는 매학기에 학생의 제1전공에 따라 전공지도교수를 배정한다.
2. 전공지도교수는 학기별 1회 이상 담당 학생을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졸업사정)

- ① 학부에서는 매학기 졸업생예정자들의 졸업사정을 실시하여 학부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한다.
- ②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소속 학생의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서 졸업사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받아서 학부회의를 거쳐 교무처로 제출한다.

제11조 (정기적인 교육환경 및 교육결과 평가)

- ① 전산전자공학부의 학부사무실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기록하여 학부장에게 보고한다.
 - 1. 각 교원별 업무량 파악(담당 강의 시수, 담당 행정 업무, 참여중인 TFT)
 - 2. 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 및 평균 전공학생 상담 건수
 - 3.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 및 진학 현황
 - 4. 해당 학기 전공별 및 학부 전체의 재학생의 전입 및 전출 상황
- ② 학부장은 1항의 평가한 문서와 개별 전공프로그램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학부회의를 거쳐서 학부의 교육환경 개선 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고 교수 총원 등의 대학본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 구체적 평가시기 및 분석 절차는 전산전자공학부 교육환경 관리 지침에서 정한다.

제12조 (발전계획의 수립 및 개선)

전산전자공학부 발전계획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산전자공학부 발전계획 개선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